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6114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611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247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변론 종결2020. 4. 3.

판결 선고2020. 4. 2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247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65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와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7. 11. 12. 06: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회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1차로에 쓰러져 있던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G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은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 차량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8. 3. 22. 망인의 유족인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218,650,53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부모들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H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판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19. 1. 23.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1627 판결)

2)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9. 1. 23.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노3716 판결), 2019. 4. 23.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2466 판결).

3) 피고는 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선행사고로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망인을 역과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원고의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원고가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218,650,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산출된 적정 보험금,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금액이 된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1) 일실수입 ○ 기초사항 : J생 남자로 사고 당시 20세 6개월, 기대여명 60.11년

○ 가동연한 : 만 65세

○ 월 소득 : 2017. 11. 12.부터 2018. 4. 30.까지 2,416,018원, 2018. 5. 1.부터 2018. 8. 31.까지 월 2,598,860원, 2018. 9.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월 2,759,394원 (보통인부 월 소득액)

○ 계산 : 위와 같은 사항 및 생계비 1/3 공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망인의 일실수입은 439,957,423원이다.

2) 장례비 : 5,000,000원

3)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60%

○ 계산 : 266,974,453원[= (일실수입 439,957,423원 + 장례비 5,000,000원) × 책임제한 60%, 원 단위 미만 버림]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합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배상액은 합계 316,974,453원(266,974,453원 + 50,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손해담보특약에 의하여 산출된 적정 보험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1)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지급기준 위 지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1. 장례비

가.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용어 풀이>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K협회, L단체)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 가능월수

(1)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산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

2)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하여 가) 일실수입

원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G의 정년을 60세로 보고, 위 정년까지는(군복무 기간 제외)

일용근로자의 통계 월소득인 2,168,45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일실수입을 279,417,55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장례비 및 위자료

원고는 사망위자료로 80,000,000원, 장례비로 5,000,000원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 지급액

원고는 망인의 과실을 40%로 책정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218,650,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1) 책임보험금의 공제 원고가 피고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구상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공탁금의 공제 가) 을 제1호증,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12.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망인의 부모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망인의 부모는 2019. 6. 20.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3. 22.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218,650,5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후 제3자가 다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대위권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므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후 피고가 망인의 부모들을 상대로 공탁한 30,000,000원은 원고의 구상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대위 취득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보험금 지급액인 218,650,530원이고, 원고의 구상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피고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15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8,650,530원(= 218,650,530원 - 원고가 H으로부터 환수한 책임보험금 15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8,650,53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23.(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보험금 지급일인 2018. 3. 22.로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인정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철

판사이수진

판사박동복